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913
----------	-------

발의연월일 : 2026. 2. 20.

발 의 자 : 조은희 · 조승환 · 이종욱
한지아 · 이만희 · 이성권
김용태 · 이인선 · 서명옥
신성범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그 목적에 따라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약취·유기한 경우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살해할 목적인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최근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목적으로 납치·유괴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할 필요가 있음에도 이러한 목적으로 미성년자를 약취·유인하거나 유괴하는 경우에 별도의 가중처벌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미성년자를 성범죄의 목적으로 약취·유괴하거나 유인하는 경우에 대하여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5조의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3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중전의 제6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중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중전의 제8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제1호·제2호”를 “제1항, 제2항제1호·제2호 또는 제3항”으로 한다.

- ③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형법」 제288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의2(약취·유인죄의 가중처벌) ① · ② (생략) <u><신설></u>	제5조의2(약취·유인죄의 가중처벌) ① · ② (현행과 같음) <u>③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형법」 제288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u>
<u>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사람을 방조(幫助)하여 약취 또는 유인된 미성년자를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귀가하지 못하게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u>	<u>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u> ----- ----- ----- ----- -----.
④ · ⑤ (생략)	④ · ⑤ (현행과 같음)
<u>⑥ 제1항 및 제2항(제2항제4호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u>	<u>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u> ----- ----- -----.
<u>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항의 죄를 범한 사람을 은닉하거나 도피하게 한 사람은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u>	<u>⑧ -----제7항</u> ----- ----- ----- -----.

<u>⑧ 제1항 또는 제2항제1호 · 제2호</u> 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u>⑨ 제1항, 제2항제1호 · 제2호 또는 제3항</u> ----- ----- ----- --.
--	--